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2가단314014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승찬

변론 종결2024. 10. 16.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71,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2.부터 2022. 5.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2. 7. 28.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8.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 피보험자 : C

○ 보증내용 : 통신사업자 대리점(판매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지급보증

○ 보험기간: 2021. 6. 8. ~ 2022. 5. 31.

나. 피고 직원이 휴대전화 가개통 후 단말기를 편취하고, 고객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사기를 하여 C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C은 2022. 2. 17.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 5. 피고에게 보험금 35,121,614원이 지급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22. 4. 11. C에게 보험금 32,971,402원(= 휴대전화 가개통 후 단말기를 편취 29,122,714원 + 고객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사기 3,848,688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원고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 없이 피고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약정지연이율은 원고의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9%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2,971,402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22. 4. 12.부터 2022. 5. 11.까지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 7. 28.까지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22. 1. 14.부터 2022. 1. 20.까지 C에게 배상금으로 51,775,782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2022. 1.부터 4.경까지 판매한 166건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수수료 33,200,000원을 C이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84,975,892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C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손해금을 모두 배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C에게 손해배상 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주은영